

2026년 귀속 기준 · 공식 출처 교차검증

# 연말정산 미리 설계서

12월 31일이 지나면  
바꿀 수 없는 것들



# 일러두기

## ● 이 책의 기준

이 책은 **2026년 귀속 연말정산**(2027년 1~2월 신고)을 기준으로 씁니다. 2025년 귀속과 달라진 항목이 여럿 있어 본문에 따로 표시했습니다.

모든 한도와 공제율은 **소득세법(법률 제21221호·제21548호)**, **조세특례제한법(법률 제21223호)** 조문과 보건복지부·국민연금공단·재정경제부의 공식 자료를 교차 확인했습니다. 근거는 부록 C에 URL까지 적어 두었습니다.

세액공제율은 **소득세 기준**입니다. 지방소득세(소득세의 10%)가 함께 줄어드니 체감 절감률은 표기된 값의 1.1배입니다. 본문에서는 헛갈리지 않도록 둘 다 적었습니다.

부록 A의 소득세는 **1인 가구·기본공제만 반영한 추정치**입니다. 실제 원천징수액이나 연말정산 결정세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.

## ●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

2026년 7~8월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**국회 심의 중**이고 대부분 **2027년 귀속부터** 적용됩니다. 25장에 따로 모아 두었고, 본문의 다른 숫자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

이 책은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·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.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판단의 최종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# 목차

## PART 1 · 지금 내 위치부터 안다
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01 |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게 아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|
|    | 12월 31일이 지나면 신고 방법만 남고 절세 방법은 사라집니다. 지금이 유일... |   |
| 02 |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완전히 다른 말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| 1 |
|    | 세액공제가 먼저입니다. 신용카드부터 걱정하는 건 순서가 거꾸로입니다.         |   |
| 03 | 내 한계세율을 알면 모든 판단이 쉬워진다                         | 2 |
|    | 내 한계세율을 모르면 '이거 하면 얼마 아껴요?'에 답할 수 없습니다. 부록...  |   |
| 04 | 월급에서 이미 나가고 있는 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 |
|    | 2026년은 보험료가 올라 실수령액이 줄었습니다. 그만큼 공제를 챙길 이유가...  |   |

## PART 2 · 가장 확실한 카드 — 연금계좌
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05 | 연금저축과 IRP — 넣는 순간 확정되는 환급                      | 5 |
|    | 900만원을 채우면 연봉에 따라 119만원에서 149만원이 돌아옵니다. 다른...  |   |
| 06 | 5,500만원이라는 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 |
|    | 명세서의 '총급여'를 직접 확인하세요. 계약 연봉과 다릅니다.             |   |
| 07 | 언제, 얼마씩 넣을 것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 |
|    | 12월 31일 입금까지 인정됩니다. 다만 닉 달로 나눠 넣는 편이 실행 가능성... |   |
| 08 | 연금계좌에 넣기 전에 알아야 할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 |
|    | 5년 안에 쓸 돈은 넣지 마세요. 그것만 지키면 연금계좌는 가장 안전한 절세...  |   |

## PART 3 · 9월부터 손봐야 하는 신용카드
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09 | 신용카드 공제는 '25%'부터 시작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| 9  |
|    | 9월 첫 과제: 홈택스에서 올해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25% 문턱을 넘었는지... |    |
| 10 | 문턱을 넘었다면 체크카드로 갈아탄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|
|    | 문턱 전에는 신용카드, 문턱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.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.      |    |
| 11 | 2026년부터 달라진 것 —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늘어난다               | 11 |
|    | 자녀 둘이면 한도가 100만원 늘었습니다. 한계세율 16.5%면 16만 5천원... |    |
| 12 | 한도를 넘겨도 더 받는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1 |
|    | 총급여 7,000만원 이하라면 헬스장·영화·책값이 추가 한도 300만원 안으로... |    |

## PART 4 · 의료비와 교육비, 문턱을 넘는 법
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3 | 의료비는 3%를 넘겨야 시작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3 |
|    | 부부라면 총급여가 낮은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 문턱을 넘기세요.             |    |
| 14 | 빠뜨리기 쉬운 의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4 |
|    | 12월에 안경을 맞출 거면 올해 안에 결제하세요. 해가 바뀌면 내년 몫이 됩니... |    |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<b>15</b> | <b>교육비 — 본인 학비는 한도가 없다</b>                     | <b>15</b> |
|           |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다면 한도 없이 15%를 돌려받습니다. 가장 많이 놓치는... |           |

#### **PART 5 · 집에 관한 세 가지 공제**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<b>16</b> | <b>주택청약종합저축 — 40%를 소득공제받는다</b>                 | <b>16</b> |
|           |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냈는지 확인하세요. 안 내면 넣어도 공제가 안 됩니다.    |           |
| <b>17</b> | <b>월세 세액공제 — 최대 170만원</b>                      | <b>17</b> |
|           |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오늘 하세요. 하루라도 빨라야 인정 기간이 길니다.    |           |
| <b>18</b> | <b>주택담보대출 이자 — 조건에 따라 한도가 2,000만원</b>          | <b>18</b> |
|           | 대출을 갈아탈 계획이라면 '15년 이상 + 고정금리 + 비거치식'을 맞추는 게... |           |

#### **PART 6 · 가족을 다시 세어 본다**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<b>19</b> | <b>2026년 최대 변화 — 자녀세액공제 나이가 올라갔다</b>           | <b>19</b> |
|           | 2018년생 이후 아이는 2026년 귀속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 대... |           |
| <b>20</b> | <b>부양가족을 다시 세어 본다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20</b> |
|           | 따로 사는 부모님도 됩니다. 다만 형제 중 한 명만 올려야 합니다.          |           |
| <b>21</b> | <b>놓치기 쉬운 세 가지 — 기부금, 고향사랑, 결혼</b>             | <b>21</b> |
|           | 고향사랑기부 10만원은 세금으로 돌려받고 특산품 3만원이 남습니다. 안 할 이... |           |

#### **PART 7 · 12주 실행 계획**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<b>22</b> | <b>9월 — 지금 당장 할 네 가지</b>                       | <b>23</b> |
|           | 9월은 숫자를 확인하는 달입니다. 여기서 틀리면 넉 달이 헛됩니다.          |           |
| <b>23</b> | <b>10월 ~ 11월 — 실제로 돈을 옮긴다</b>                  | <b>23</b> |
|           | 10~11월은 자동이체를 거는 달입니다. 손으로 하려면 잊어버립니다.         |           |
| <b>24</b> | <b>12월 — 31일이 지나면 못 하는 것들</b>                  | <b>24</b> |
|           | 돈 옮기는 일은 12월까지, 종이 내는 일은 1월에. 이 한 줄이면 됩니다.     |           |
| <b>25</b> | <b>2027년부터 바뀔 것 — 아직 확정은 아니다</b>               | <b>25</b> |
|           | 위 내용은 전부 국회 심의 중입니다.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... |           |

#### **부록**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<b>A. 연봉별 한계세율표</b>          | <b>27</b> |
| <b>A. 2026 연봉별 실수령액표</b>     | <b>30</b> |
| <b>B. 2026년 귀속 공제 한눈에 보기</b> | <b>35</b> |
| <b>C. 근거 자료 출처</b>           | <b>37</b> |

# 바쁘면 이 장만 읽어도 됩니다

넉 달 동안 할 일을 효과가 큰 순서로 줄이면 다섯 줄입니다. 이 다섯 가지가 전체 효과의 대부분입니다.

- 1 연금저축·IRP를 채운다.** 합쳐 9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, 총급여에 따라 119만원에서 149만원이 돌아옵니다. 12월 31일 입금까지 인정됩니다.
- 2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%를 넘었는지 확인한다.** 넘졌으면 남은 넉 달은 체크카드로 바꿉니다. 공제율이 15%에서 30%로 두 배가 됩니다.
- 3 월세에 산다면 전입신고부터 확인한다.**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같아야 하고, 최대 170만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.
- 4 무주택 세대주면 주택청약저축을 300만원까지 채운다.** 40%를 소득공제받고,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인정됩니다.
- 5 미룬 병원 치료는 문턱을 넘긴 해에 몰아서 받는다.** 총급여 3%를 넘긴 부분부터 공제되므로, 이미 넘긴 해에 몰아야 유리합니다.

## ● 순서가 중요합니다

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훨씬 셉니다. 신용카드부터 걱정하는 건 순서가 거꾸로입니다. 연금계좌를 먼저 채우고, 그다음에 카드를 뽐니다.

## 이 책이 다루는 것

### 지금 내 위치부터 안다

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, 내 한계세율 찾는 법. 판단의 기준을 먼저 세운다

### 가장 확실한 카드 — 연금계좌

900만원까지 넣고 최대 149만원을 돌려받는 순서, 그리고 넣기 전에 알아야 할 합정

### 9월부터 손봐야 하는 신용카드

25% 문턱을 넘겼는지 확인하고 남은 넉 달의 결제수단을 바꾸는 법

### 의료비와 교육비, 문턱을 넘는 법

3% 문턱을 넘기는 몰아주기와, 국세청 간소화에 잡히지 않는 항목들

### 집에 관한 세 가지 공제

청약저축·월세·주택담보대출 이자. 조건이 까다로운 대신 금액이 크다

### 가족을 다시 세어 본다

2026년에 바뀐 자녀세액공제 나이, 따로 사는 부모님 등록, 놓치기 쉬운 세 가지

### 12주 실행 계획

9월·10~11월·12월에 각각 무엇을 할지. 12월 31일이 지나면 못 하는 것들

## 지금 내 위치부터 안다

### 01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게 아니다

1월에 회사가 서류를 건넵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말정산을 1월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1월에 하는 건 이미 끝난 1년을 신고하는 일입니다. 그때는 바꿀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.

환급액을 실제로 바꾸는 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어떻게 썼는가입니다.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었는지, 카드를 어떤 걸로 긁었는지, 병원비를 언제 몰아서 냈는지. 이걸 전부 12월 31일 자정까지만 손댈 수 있습니다.

지금은 9월입니다. 넉 달이 남았습니다. 이 넉 달이 내년 2월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정합니다. 이 책은 그 넉 달 동안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만 다룹니다.

#### 연말정산의 시간표
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1월 ~ 12월 | 이때만 바꿀 수 있다     |
| 다음 해 1월  | 회사에 서류 제출       |
| 다음 해 2월  | 월급에 환급 또는 추가 납부 |
| 지금 남은 시간 | 9월 ~ 12월, 약 16주 |

#### ● 한 줄 정리

12월 31일이 지나면 신고 방법만 남고 절세 방법은 사라집니다. 지금이 유일한 기회입니다.

### 0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완전히 다른 말이다

둘 다 '공제'라 헷갈리는데, 돌려받는 금액이 몇 배씩 차이 납니다. 이거 하나만 알아도 우선순위가 정리됩니다.

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깎아 주는 것입니다. 100만원을 공제받으면 세금이 100만원 주는 게 아니라, 세금을 계산할 소득이 100만원 줄어듭니다. 그래서 실제로 아끼는 돈은 내 세율만큼입니다. 세율이 16.5%면 16만 5천원입니다.

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것입니다. 100만원을 세액공제받으면 세금이 그대로 100만원 줄어듭니다.

그래서 같은 100만원이라도 세액공제가 훨씬 셉니다. 신용카드는 소득공제, 연금저축·의료비·교육비·월세는 세액공제입니다.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.

| 100만원을 공제받으면 실제로 아끼는 돈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소득공제 · 연봉 3,000만원      | 약 16만 5천원        |
| 소득공제 · 연봉 8,000만원      | 약 26만 4천원        |
| 세액공제 15%               | 16만 5천원 (지방세 포함) |
| 세액공제 100만원 전액          | 100만원            |

#### ● 한 줄 정리

세액공제가 먼저입니다. 신용카드부터 걱정하는 건 순서가 거꾸로입니다.

### 03

## 내 한계세율을 알면 모든 판단이 쉬워진다

한계세율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. 내가 지금보다 100만원을 더 벌면 그중 몇 %를 세금으로 떼는가입니다. 거꾸로 말하면, 소득공제를 100만원 받았을 때 몇 %를 돌려받는가이기도 합니다.

우리나라 소득세는 계단식입니다. 소득이 많아질수록 위 칸으로 올라가고, 위 칸일수록 세율이 높습니다. 그래서 같은 공제라도 연봉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.

내 한계세율은 부록 A에 연봉별로 정리해 뒀습니다. 대부분의 직장인은 16.5%(지방세 포함) 구간에 있습니다. 총급여 7,300만원 근처에서 26.4%로 한 칸 올라갑니다.

| 2026년 소득세 세율 (지방소득세 미포함)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과세표준 1,400만원 이하          | 6%  |
| 1,400만 ~ 5,000만원         | 15% |
| 5,000만 ~ 8,800만원         | 24% |
| 8,800만 ~ 1억 5,000만원      | 35% |
| 1억 5,000만 ~ 3억원          | 38% |

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

지방소득세

소득세의 10%

실제 체감 세율

표시 세율 × 1.1

● 한 줄 정리

내 한계세율을 모르면 '이거 하면 얼마 아껴요?'에 답할 수 없습니다. 부록 A에서 먼저 찾아 두세요.

04

## 월급에서 이미 나가고 있는 돈

연말정산 이야기를 하기 전에, 매달 월급에서 무엇이 얼마나 빠지는지부터 확인합니다. 여기 숫자가 연말정산 계산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.

2026년에는 **국민연금 요율이 올랐습니다**. 2025년까지 총 9.0%(회사와 반반이라 근로자 4.5%)였는데, 2026년부터 9.5%(근로자 4.75%)입니다. 건강보험도 7.09%에서 7.19%로 올랐습니다. 같은 연봉이면 작년보다 실수령액이 조금 줄어듭니다.

4대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. 이미 자동으로 반영되니 따로 챙길 건 없습니다. 다만 **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빼고 봐야** 한계세율을 제대로 찾습니다.

###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

국민연금

4.75% (2025년 4.5%)

국민연금 상한

월 659만원까지만

건강보험

3.595% (2025년 3.545%)

장기요양

건강보험료의 13.14%

고용보험

0.9%

| 연봉 4,000만원이면 매달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국민연금            | 148,833원        |
| 건강보험            | 112,643원        |
| 장기요양            | 14,801원         |
| 고용보험            | 28,200원         |
| <b>4대보험 합계</b>  | <b>304,477원</b> |

● 한 줄 정리

2026년은 보험료가 올라 실수령액이 줄었습니다. 그만큼 공제를 챙길 이유가 커졌습니다.

## 가장 확실한 카드 — 연금계좌

## 05

## 연금저축과 IRP — 넣는 순간 확정되는 환급

연말정산에서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환급은 연금계좌입니다. 다른 공제는 '이미 쓴 돈'을 인정받는 거라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. 연금계좌는 12월 31일까지 넣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환급이 확정됩니다.

계좌는 두 종류입니다. **연금저축**은 증권사·은행·보험사에서 만드는 개인연금 계좌이고, **IRP**는 퇴직연금을 개인이 직접 굴리는 계좌입니다. 둘 다 세액공제를 받습니다.

한도는 이렇게 걸립니다. **연금저축은 혼자 600만원까지,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는 900만원까지**입니다.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었다면 IRP에 300만원을 더 넣어 9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.

## 2026년 귀속 연금계좌 세액공제
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연금저축 단독 한도           | 연 600만원            |
| 연금저축 + IRP 합산        | 연 900만원            |
| 공제율 (총급여 5,500만원 이하) | 15% · 지방세 포함 16.5% |
| 공제율 (총급여 5,500만원 초과) | 12% · 지방세 포함 13.2% |
| 최대 환급 (16.5% 구간)     | 1,485,000원         |
| 최대 환급 (13.2% 구간)     | 1,188,000원         |

## ● 한 줄 정리

900만원을 채우면 연봉에 따라 119만원에서 149만원이 돌아옵니다. 다른 어떤 항목도 이만큼 안 됩니다.

연금계좌 공제율은 두 칸뿐입니다. **총급여 5,500만원 이하면 15%, 넘으면 12%**입니다.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16.5%와 13.2%입니다.

여기서 말하는 총급여는 **세전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**입니다.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라 1년이면 240만원이 빠집니다. 그래서 **계약 연봉이 5,700만원이어도 총급여는 5,460만원**이 되어 15%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

5,500만원 근처라면 이 선을 꼭 확인하세요. 900만원을 넣었을 때 **16.5% 구간과 13.2% 구간의 차이가 29만 7천원**입니다. 한 해 커피값이 아닙니다.

#### 총급여 5,500만원 선의 실제 차이

900만원 납입 · 16.5% 1,485,000원 환급

900만원 납입 · 13.2% 1,188,000원 환급

**차이 297,000원**

#### 총급여 계산할 때 빼는 대표 비과세

식대 월 20만원까지

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까지

출산·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원까지

#### ● 한 줄 정리

명세서의 '총급여'를 직접 확인하세요. 계약 연봉과 다릅니다.

연금계좌는 **12월 31일까지 입금만 되어 있으면** 그해 공제를 받습니다. 1월에 나눠 넣든 12월에 한 번에 넣든 공제액은 같습니다.

그렇다면 12월에 몰아넣는 게 나을까요? 세금만 보면 같습니다. 하지만 **두 가지 이유로 나눠 넣는 걸 권합니다**. 첫째, 12월에 900만원을 한 번에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. 둘째, 연금계좌에 넣은 돈은 대부분 펀드나 ETF로 굴리게 되는데, 한 번에 사면 그날 가격에 전부 걸립니다.

**남은 녀 달이라면 이렇게 계산합니다.** 올해 이미 넣은 금액을 확인하고, 900만원(또는 감당 가능한 금액)에서 뺀 뒤, 9월부터 12월까지 녀 달로 나눕니다. 예를 들어 지금까지 300만원을 넣었다면 남은 600만원을 녀 달로 나눠 매달 150만원씩입니다.

| 남은 기간 월 납입액 계산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① 목표 금액        | 최대 900만원      |
| ② 올해 이미 넣은 금액  | 연금저축 + IRP 합계 |
| ③ 남은 금액        | ① - ②         |
| ④ 월 납입액        | ③ ÷ 남은 개월 수   |

| 무리하지 않는 기준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여유가 빠듯하면      | 연금저축 600만원까지만 |
| 600만원 · 16.5% | 990,000원 환급   |
| 600만원 · 13.2% | 792,000원 환급   |

#### ● 한 줄 정리

12월 31일 입금까지 인정됩니다. 다만 녀 달로 나눠 넣는 편이 실행 가능성이 높습니다.

08

## 연금계좌에 넣기 전에 알아야 할 것

연금계좌는 공짜가 아닙니다. **세금을 지금 안 내는 대신 나중에 낸다**는 약속입니다. 조건을 알고 넣어야 합니다.

가장 중요한 건 **중도 인출**입니다.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동안 불어난 수익을 만 55세 전에 빼면 **기타소득세 16.5%**를 뺍니다. 15% 공제를 받고 16.5%를 토해내는 셈이라 손해입니다.

그래서 **5년 안에 쓸 돈은 넣지 마세요**. 전세 보증금, 결혼 자금, 이사 비용처럼 날짜가 정해진 돈은 연금계좌 바깥에 두어야 합니다.

IRP는 한 가지 제약이 더 있습니다. **위험자산을 70%까지만** 담을 수 있습니다. 주식형 ETF를 100% 채우고 싶다면 연금저축이 더 자유롭습니다.

| 만 55세 전에 빼면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세액공제 받은 원금 + 수익       | 기타소득세 16.5% |
|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         | 세금 없음       |
| 이런 사유는 낮은 세율로 인출 가능   |             |
| 천재지변, 가입자 사망·해외이주     | 연금소득세율      |
|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 3개월 이상 요양 | 연금소득세율      |
| 가입자 파산·개인회생           | 연금소득세율      |
|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        |             |
| 연금저축 위험자산 한도          | 제한 없음       |
| IRP 위험자산 한도           | 70%         |

#### ● 한 줄 정리

5년 안에 쓸 돈은 넣지 마세요. 그것만 지키면 연금계좌는 가장 안전한 절세 카드입니다.

## 9월부터 손봐야 하는 신용카드

### 09 신용카드 공제는 '25%'부터 시작한다

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두고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'카드를 많이 쓰면 돌려받는다'입니다. 아닙니다.

공제는 **1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를 넘은 다음부터** 시작합니다. 총급여가 4,000만원이면 1,000만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원입니다. **1,000만원을 넘긴 그다음 1원부터** 계산에 들어갑니다.

그래서 9월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**지금까지 얼마 썼는지 확인하는 것**입니다. 국세청 홈택스의 '연말정산 미리보기'에서 1월부터 9월까지 카드 사용액을 볼 수 있습니다.

여기서 전략이 갑니다. **아직 25%를 못 넘었다면** 결제수단을 바꿔도 소용없습니다. **이미 넘었다면** 지금부터 쓰는 돈은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두 배까지 벌어집니다.

#### 총급여별 25% 문턱

|   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|
| 총급여 3,000만원 | 750만원   |
| 총급여 4,000만원 | 1,000만원 |
| 총급여 5,000만원 | 1,250만원 |
| 총급여 6,000만원 | 1,500만원 |
| 총급여 7,000만원 | 1,750만원 |

#### ● 한 줄 정리

9월 첫 과제: 홈택스에서 올해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25% 문턱을 넘었는지 봅니다.

카드 공제율은 결제수단마다 다릅니다. 신용카드는 15%,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%입니다. 정확히 두 배입니다.

그래서 25% 문턱을 이미 넘었다면, 남은 녀 달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게 유리합니다. 같은 100만원을 써도 공제 대상 금액이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납니다.

다만 문턱을 아직 못 넘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. 국세청은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먼저 문턱에 채웁니다. 즉 신용카드 사용액이 25%를 메우는 데 먼저 쓰이고, 체크카드는 그 위에 얹힙니다. 그래서 연초에는 신용카드로 문턱을 채우고, 넘긴 뒤에 체크카드로 바꾸는 것이 교과서적인 순서입니다.

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%로 가장 높습니다. 버스·지하철·기차 요금은 자동으로 잡히니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.

#### 2026년 귀속 결제수단별 공제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용카드                      | 15%                   |
| 체크카드 · 현금영수증              | 30%                   |
| 도서 · 공연 · 박물관 · 영화 · 체육시설 | 30% (총급여 7,000만원 이하만) |
| 전통시장                      | 40%                   |
| 대중교통                      | 40%                   |

#### 총급여 4,000만원, 남은 400만원을 쓴다면
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전부 신용카드            | 공제 대상 60만원  |
| 전부 체크카드            | 공제 대상 120만원 |
| 차이 (한계세율 16.5% 기준) | 약 99,000원   |

#### ● 한 줄 정리

문턱 전에는 신용카드, 문턱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.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.

## 2026년부터 달라진 것 —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늘어난다

신용카드 공제에는 **한도**가 있습니다. 아무리 많이 써도 이 금액 이상은 공제받지 못합니다. 2025년까지는 총급여 7,000만원 이하가 300만원, 초과가 250만원으로 끝이었습니다.

**2026년 귀속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올라갑니다.** 자녀 한 명당 50만원씩, 최대 1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. 자녀가 둘 이상이면 총급여 7,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**300만원에서 400만원**이 됩니다.

이건 2025년 12월에 확정된 개정 사항이고, 적용 기한도 2028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. 따로 신청할 건 없고,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녀가 있으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.

### 2026년 귀속 기본 공제한도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총급여 7,000만원 이하 · 자녀 없음    | 300만원 |
| 총급여 7,000만원 이하 · 자녀 1명    | 350만원 |
| 총급여 7,000만원 이하 · 자녀 2명 이상 | 400만원 |
| 총급여 7,000만원 초과 · 자녀 없음    | 250만원 |
| 총급여 7,000만원 초과 · 자녀 1명    | 275만원 |
| 총급여 7,000만원 초과 · 자녀 2명 이상 | 300만원 |

#### ● 한 줄 정리

자녀 둘이면 한도가 100만원 늘었습니다. 한계세율 16.5%면 16만 5천원짜리 변화입니다.

## 한도를 넘겨도 더 받는 방법

기본 한도를 다 채웠다고 끝이 아닙니다. **추가 한도**가 따로 있습니다.

**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연 200만원까지 추가로** 공제받습니다. 총급여 7,000만원 이하라면 여기에 **도서·공연·영화·체육시설 사용분까지 합쳐 연 300만원까지** 늘어납니다.

체육시설이 들어온 건 비교적 최근입니다.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2025년 7월부터 대상이 됐고, **2026년은 1년 전체가 적용되는 첫해**입니다. 총급여 7,000만원 이하라면 헬스장 등록비도 챙기세요.

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. 인터넷에 아직도 돌아다니는 '**소비 증가분 추가공제 100만원**'은 **2024년 한 해만 있던 제도**입니다. 2026년에는 없습니다.

| 추가 공제한도 (기본 한도와 별도)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전통시장 + 대중교통              | 연 200만원         |
| 총급여 7,000만원 이하 · 문화체육 포함 | 연 300만원         |
| 문화체육 사용분에 들어가는 것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도서 · 신문 구입               | 포함              |
| 공연 · 박물관 · 미술관           | 포함              |
| 영화 관람료                   | 포함              |
| 헬스장 · 수영장 이용료            | 포함 (2025년 7월부터) |
| 이제 없는 제도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소비 증가분 추가공제 100만원        | 2024년 귀속 한정     |

#### ● 한 줄 정리

총급여 7,000만원 이하라면 헬스장·영화·책값이 추가 한도 300만원 안으로 들어옵니다.

## 의료비와 교육비, 문턱을 넘는 법

## 13

### 의료비는 3%를 넘겨야 시작한다

의료비도 문턱이 있습니다. **총급여의 3%**입니다. 총급여가 4,000만원이면 120만원까지는 공제가 없고, **120만원을 넘긴 부분만 15%**를 돌려받습니다.

그래서 의료비는 **가족 전체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**합니다. 부부가 각자 100만원씩 썼다면 둘 다 문턱을 못 넘어 0원입니다. 한 사람 앞으로 200만원을 모으면 문턱을 넘긴 부분이 공제됩니다.

누구에게 몰아줄까요? **총급여가 낮은 쪽**입니다.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. 다만 그 사람의 세금이 아예 없으면 돌려받을 게 없으니, 세금을 내고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.

#### 총급여별 의료비 문턱 (3%)

|  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|
| 총급여 3,000만원 | 90만원  |
| 총급여 4,000만원 | 120만원 |
| 총급여 5,000만원 | 150만원 |
| 총급여 7,000만원 | 210만원 |

#### 공제율과 한도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               | 15% · 연 700만원 한도 |
| 본인 · 65세 이상 · 장애인 · 중증질환자 | 15% · 한도 없음      |
| 미숙아 · 선천성이상아              | 20% · 한도 없음      |
| 난임 시술비                    | 30% · 한도 없음      |

#### ● 한 줄 정리

부부라면 총급여가 낮은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 문턱을 넘기세요.

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**안 잡히는 의료비**가 꽤 있습니다. 이건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.

가장 흔한 게 **안경과 콘택트렌즈**입니다. 한 명당 연 50만원까지 인정되는데, 안경점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에 '시력교정용'이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. 12월에 안경을 새로 맞출 계획이 있다면 그해 안에 결제하는 게 낫습니다.

**보청기,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와 의사 처방을 받은 의료기기 구입·임대료**도 대상입니다. 산후조리원 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.

반대로 **안 되는 것도** 분명합니다. 미용·성형 수술비, 건강기능식품, 외국 병원 진료비는 제외입니다.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도 빼야 합니다.

#### 간소화에 안 잡히니 직접 챙길 것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안경·콘택트렌즈    | 1인당 연 50만원   |
| 보청기·장애인 보장구 | 전액           |
| 의사 처방 의료기기  | 구입비·임대료      |
| 산후조리원       | 출산 1회당 200만원 |

#### 의료비에 안 들어가는 것

|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|----|
| 미용·성형 수술비    | 제외 |
| 건강기능식품       | 제외 |
| 외국 의료기관 진료비  | 제외 |
|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 | 차감 |

#### ● 한 줄 정리

12월에 안경을 맞출 거면 올해 안에 결제하세요. 해가 바뀌면 내년 몫이 됩니다.

교육비 세액공제는 15%입니다. 대상마다 한도가 다릅니다.

가장 크게 놓치는 건 **본인 교육비**입니다. 대학·대학원 등록금,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, 그리고 **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**까지 **한도 없이** 공제됩니다.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다면 반드시 챙기세요.

자녀는 초·중·고가 1명당 300만원, 대학생이 1명당 900만원입니다. **대학원 학비는 본인만** 됩니다. 자녀 대학원비는 안 됩니다.

취학 전 아동은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도 들어갑니다. 초등학생부터는 안 되는데, 예외로 **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**의 예체능 학원은 인정됩니다.

#### 교육비 세액공제 (공제율 15%)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본인 대학·대학원·직업훈련   | 한도 없음       |
| 본인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| 한도 없음       |
| 취학 전 아동·초·중·고    | 1명당 연 300만원 |
| 대학생              | 1명당 연 900만원 |
| 장애인 특수교육비        | 한도 없음       |

#### 초·중·고에서 인정되는 항목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교복 구입비      | 1명당 연 50만원    |
| 체험학습비       | 1명당 연 30만원    |
| 급식비·교과서 구입비 | 포함            |
| 학원비         | 제외 (취학 전만 가능) |

#### ● 한 줄 정리

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다면 한도 없이 15%를 돌려받습니다.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입니다.

## 집에 관한 세 가지 공제

16

## 주택청약종합저축 — 40%를 소득공제받는다

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돈은 연 300만원까지, 그 40%를 소득공제받습니다. 300만원을 다 넣으면 120만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.

조건은 두 가지입니다. 총급여 7,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. 2025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이 됐습니다.

월 25만원씩 넣으면 1년에 300만원입니다. 지금 넣는 금액이 이보다 적다면 12월까지 남은 개월로 나눠 채울 수 있습니다.

주의할 게 있습니다. 주택 당점이 아닌 이유로 중도 해지하면 그해 납입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. 그리고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. 이걸 12월 안에 처리하세요.

##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
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소득 요건    | 총급여 7,000만원 이하      |
| 대상       |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|
| 납입 한도    | 연 300만원 (월 25만원)    |
| 공제율      | 40% · 소득공제          |
| 최대 소득공제액 | 120만원               |
| 적용 기한    | 2028년 12월 31일       |

## 한계세율별 실제 절세액
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16.5% 구간 | 약 198,000원       |
| 26.4% 구간 | 총급여 요건 초과로 해당 없음 |

## ● 한 줄 정리

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냈는지 확인하세요. 안 내면 넣어도 공제가 안 됩니다.

월세로 살고 있다면 **1년 월세의 15%**를 세액공제받습니다. 총급여 5,500만원 이하면 **17%**로 올라갑니다.  
소득공제가 아니라 **세액공제**라 그대로 세금에서 빠집니다.

대상 월세는 **연 1,000만원까지**입니다. 월 84만원 정도까지 꼭 채워집니다. 17%를 적용받으면 최대 170만원을 돌려받습니다.

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. **총급여 8,000만원 이하, 무주택 세대주**, 그리고 사는 집이 **85m<sup>2</sup> 이하**이거나 **기준시가 4억원 이하**여야 합니다.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됩니다.

가장 많이 걸리는 게 **주소**입니다.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.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**지금 바로 하세요**. 전입신고한 날 이후의 월세만 인정됩니다.

| 월세 세액공제 요건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소득 요건                | 총급여 8,000만원 이하                     |
| 공제율 (기본)             | 15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공제율 (총급여 5,500만원 이하) | 17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상 월세 한도             | 연 1,0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최대 공제세액              | 17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택 요건                | 85m <sup>2</sup>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|
| 필수 조건                | 계약서 주소 = 등본 주소                     |

| 준비할 서류    |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|
| 임대차계약서 사본 | 필수       |
| 주민등록등본    | 필수       |
| 월세 이체 내역  | 계좌이체 확인서 |

#### ● 한 줄 정리

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오늘 하세요. 하루라도 빨라야 인정 기간이 길니다.

집을 사면서 받은 담보대출의 **이자**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. 원금은 안 되고 이자만 됩니다.

한도가 크게 갈립니다. **상환기간 15년 이상 + 고정금리 + 비거치식 분할상환**을 모두 만족하면 **연 2,000만원**까지입니다.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1,800만원, 둘 다 아니면 800만원입니다.

여기서 **비거치식**은 거치기간 없이 처음부터 원금을 같이 갚는 방식입니다. 이자만 내는 기간을 두면 거치식이라 한도가 확 줄어듭니다.

취득 당시 **기준시가 6억원 이하**인 주택이어야 합니다. 2024년부터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라갔습니다. 그리고 이 한도는 주택청약저축·전세자금대출 공제와 **합쳐서** 적용됩니다.

#### 2015년 이후 차입분 공제한도
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15년 이상 + 고정 + 비거치  | 연 2,000만원 |
| 15년 이상 + 둘 중 하나    | 연 1,800만원 |
| 15년 이상 + 둘 다 아님    | 연 800만원   |
| 10년 이상 15년 미만 + 하나 | 연 600만원   |
| 10년 이상 + 둘 다 아님    | 공제 불가     |

#### 주택 요건
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취득 당시 기준시가 | 6억원 이하              |
| 대상         |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     |
| 주의         | 청약저축·전세대출 공제와 합산 한도 |

#### ● 한 줄 정리

대출을 갈아탈 계획이라면 '15년 이상 + 고정금리 + 비거치식'을 맞추는 게 공제에 가장 유리합니다.

## 가족을 다시 세어 본다

19

### 2026년 최대 변화 — 자녀세액공제 나이가 올라갔다

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바뀐 건 자녀세액공제입니다. 이것 모르면 내년 2월에 당황합니다.

지금까지는 **8세 이상** 자녀에게 세액공제를 했습니다. 2026년 귀속부터는 **9세 이상**입니다. 그리고 2030년까지 매년 한 살씩 올라가 최종 13세 이상이 됩니다.

왜 올릴까요? **아동수당**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넓어졌기 때문입니다. 아동수당을 받으면서 세액공제까지 받는 중복을 막으려는 겁니다. 세금이 늘어난 게 아니라 지원 방식이 바뀐 겁니다.

예외가 하나 있습니다. **2017년에 태어난 자녀는 계속 공제 대상**입니다. 법 부칙에 따로 정해 뒀습니다.

|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2025년 귀속     | 8세 이상        |
| 2026년 귀속     | 9세 이상        |
| 2027년 귀속     | 10세 이상       |
| 2030년 이후     | 13세 이상       |
| 2017년생       | 부칙 특례로 계속 대상 |

| 자녀세액공제 금액 (변경 없음)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자녀 1명             | 연 25만원 |
| 자녀 2명             | 연 55만원 |
| 자녀 3명             | 연 95만원 |
| 출산·입양 첫째          | 연 30만원 |
| 출산·입양 둘째          | 연 50만원 |
| 출산·입양 셋째 이상       | 연 70만원 |

### ● 한 줄 정리

2018년생 이후 아이는 2026년 귀속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 대신 아동수당을 받습니다.

## 20

## 부양가족을 다시 세어 본다

부양가족 한 명을 올리면 **기본공제 150만원**이 소득에서 빠집니다. 한계세율 16.5%면 **약 24만 8천원**입니다. 그런데 조건을 몰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

핵심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. **나이**와 **소득**입니다.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,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. 소득은 **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**(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)입니다.

**같이 살지 않아도 됩니다.** 따로 사는 부모님도 내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으면 올릴 수 있습니다. 형제자매끼리 중복으로 올리면 나중에 추징됩니다.

만 70세 이상이면 **경로우대 100만원**이 추가되고, 장애인이면 **200만원**이 더 붙습니다.

### 기본공제 요건
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직계존속 (부모 · 조부모) | 만 60세 이상           |
| 직계비속 (자녀 · 손자녀) | 만 20세 이하           |
| 형제자매            |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|
| 공통 소득 요건        |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 |
|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   |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    |

### 추가 공제
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경로우대 (만 70세 이상) | 1명당 100만원 |
| 장애인             | 1명당 200만원 |
| 부녀자             | 50만원      |
| 한부모             | 100만원     |

● 한 줄 정리

따로 사는 부모님도 됩니다. 다만 형제 중 한 명만 올려야 합니다.

21

## 놓치기 쉬운 세 가지 — 기부금, 고향사랑, 결혼

기부금은 1,000만원까지 15%, 그걸 넘는 부분은 30%를 세액공제받습니다. 종교단체 헌금, 사회복지단체 후원금 모두 대상입니다. 영수증만 챙기면 됩니다.

고향사랑기부제는 거의 손해가 없는 제도입니다. 10만원을 기부하면 사실상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고, 거기에 기부액의 30%를 답례품으로 받습니다. 즉 10만원을 넣으면 3만원어치 지역 특산품이 남습니다. 연간 한도는 2,000만원까지 늘었습니다.

결혼세액공제는 시한이 있습니다.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경우에만 1인당 50만원, 부부 합쳐 100만원을 받습니다. 생애 한 번뿐입니다. 2026년이 마지막 해이니 올해 결혼했다면 반드시 챙기세요.

### 기부금 세액공제

|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|-----|
| 1,000만원 이하  | 15% |
| 1,000만원 초과분 | 30% |

### 고향사랑기부제

|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|
| 10만원 이하  | 사실상 전액 세액공제 |
| 10만원 초과분 | 15%         |
| 답례품      | 기부액의 30%    |
| 연간 한도    | 2,000만원     |

### 결혼세액공제

|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대상 | 2024 ~ 2026년 혼인신고   |
| 금액 | 1인당 50만원 · 부부 100만원 |
| 횟수 | 생애 1회               |

- **한 줄 정리**

고향사랑기부 10만원은 세금으로 돌려받고 특산품 3만원이 남습니다.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.

## 12주 실행 계획

22

## 9월 — 지금 당장 할 네 가지

넉 달 계획의 첫 달입니다. 이번 달에는 **확인**과 **세팅**만 합니다.

**첫째, 홈택스에서 '연말정산 미리보기'를 엽니다.** 1월부터 9월까지 카드 사용액과 예상 세액이 나옵니다. 25% 문턱을 넘겼는지 여기서 봅니다.

**둘째, 명세서에서 총급여를 확인합니다.** 계약 연봉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총급여입니다. 5,500만원, 7,000만원, 8,000만원 — 이 세 개의 선 중 어디에 있는지가 뒤의 판단을 전부 바꿉니다.

**셋째, 연금계좌 올해 납입액을 확인합니다.**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얼마인지 봅니다.

**넷째, 월세에 살고 있다면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.** 안 되어 있으면 오늘 하세요.

## 9월 체크리스트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| 카드 사용액 확인               |
| 총급여 확인        | 5,500 / 7,000 / 8,000 선 |
| 연금계좌 납입액 확인   | 연금저축 + IRP              |
| 전입신고 확인       | 월세 거주자                  |

## ● 한 줄 정리

9월은 숫자를 확인하는 달입니다. 여기서 틀리면 넉 달이 헛됩니다.

23

## 10월 ~ 11월 — 실제로 돈을 옮긴다

확인이 끝났으면 이제 **실행**입니다.

**연금계좌를 채웁니다.** 목표 금액에서 이미 넣은 걸 빼고, 남은 개월로 나눠 자동이체를 겁니다. 12월에 몰아넣으려다 못 넣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.

**카드를 바꿉니다.** 25% 문턱을 넘었다면 주 결제수단을 체크카드로 바꿉니다. 아직 못 넘었다면 신용카드를 그대로 쓰고, 넘긴 시점부터 바꿉니다.

**주택청약저축을 채웁니다.**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7,000만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까지 채우고,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냅니다.

**미룬 병원 치료가 있다면 이때 받습니다.** 의료비는 3% 문턱이 있어서, 이미 문턱을 넘긴 해에 몰아서 치료받는 게 유리합니다.

| 10월 ~ 11월 실행 목록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연금계좌 자동이체       | 남은 금액 ÷ 남은 개월 |
| 주 결제수단 변경       | 문턱 넘었으면 체크카드  |
| 주택청약저축          | 연 300만원 채우기   |
| 무주택 확인서         | 은행 제출         |
| 미룬 치료 · 검진      | 문턱 넘긴 해에 몰기   |

#### ● 한 줄 정리

10~11월은 자동이체를 거는 달입니다. 손으로 하려면 잊어버립니다.

24

## 12월 — 31일이 지나면 못 하는 것들

12월은 마감입니다. 아래 항목은 **12월 31일 자정**이 지나면 그해 몫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연금계좌 납입, 주택청약저축 납입, 기부금 입금, 고향사랑기부, 안경 구입, 그리고 **혼인신고**까지 전부 그렇습니다. 특히 결혼세액공제는 2026년이 마지막 해입니다.

반대로 **1월에 해도 되는 것**도 있습니다. 서류를 모으고 제출하는 일입니다. 간소화 자료 확인, 영수증 제출, 부양가족 등록은 1월에 회사 일정에 맞춰 하면 됩니다.

이 구분을 알면 12월에 마음이 급해지지 않습니다. 돈을 옮기는 일은 **12월까지**, 종이를 내는 일은 **1월에**.

### 12월 31일까지 끝내야 하는 것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연금저축 · IRP 납입 | 입금일 기준       |
| 주택청약저축 납입     | 입금일 기준       |
| 기부금 · 고향사랑기부  | 입금일 기준       |
| 안경 · 의료기기 구입  | 결제일 기준       |
| 혼인신고          | 2026년이 마지막 해 |

### 1월에 해도 되는 것

| 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|
| 간소화 자료 확인 | 1월 15일 이후  |
| 영수증 제출    | 회사 일정      |
| 부양가족 등록   | 회사 일정      |
| 경정청구      | 이후 5년 내 가능 |

#### ● 한 줄 정리

돈 옮기는 일은 12월까지, 종이 내는 일은 1월에. 이 한 줄이면 됩니다.

25

## 2027년부터 바뀔 것 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

정부가 2026년 7~8월에 세제개편안을 내놨습니다. 다만 **국회를 통과해야 확정**되고, 대부분 **2027년 귀속부터** 적용됩니다. 즉 이번 연말정산에는 **해당 없습니다**.

그래도 미리 알아 두면 내년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됩니다. 대표적인 것만 정리합니다.

**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1,000만원에서 1,200만원으로** 올라갈 예정입니다. **부양가족 소득 요건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** 완화됩니다. **대중교통 추가공제는 폐지**되고 기본공제로 합쳐집니다.

다시 강조합니다. 아래는 **정부안**이고 **국회 심의 중**입니다.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.

## 2027년 귀속부터 적용 예정 (국회 심의 중)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월세 세액공제 한도  | 1,000만원 → 1,200만원 |
| 부양가족 소득 요건  | 100만원 → 300만원     |
| 대중교통 추가공제   | 폐지 · 기본공제로 통합     |
| 도서·공연 추가공제  | 총급여 7,000만원 요건 폐지 |
|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 | 실거주 요건 추가         |
|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| 특례 상시화            |

### ● 한 줄 정리

위 내용은 전부 국회 심의 중입니다.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## 연봉별 한계세율표

---

소득공제를 100만원 받았을 때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입니다. 내 연봉 줄을 찾아 두면 본문의 모든 판단이 쉬워집니다.

| 연봉       | 과세표준    | 한계세율 | 지방세 포함 | 공제 100만원의 값어치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
| 2,400만원  | 951만원   | 6%   | 6.6%   | 66,000원       |
| 2,800만원  | 1,252만원 | 6%   | 6.6%   | 66,000원       |
| 3,200만원  | 1,553만원 | 15%  | 16.5%  | 165,000원      |
| 3,600만원  | 1,854만원 | 15%  | 16.5%  | 165,000원      |
| 4,000만원  | 2,155만원 | 15%  | 16.5%  | 165,000원      |
| 4,400만원  | 2,456만원 | 15%  | 16.5%  | 165,000원      |
| 4,800만원  | 2,763만원 | 15%  | 16.5%  | 165,000원      |
| 5,200만원  | 3,105만원 | 15%  | 16.5%  | 165,000원      |
| 5,600만원  | 3,446만원 | 15%  | 16.5%  | 165,000원      |
| 6,000만원  | 3,787만원 | 15%  | 16.5%  | 165,000원      |
| 6,400만원  | 4,128만원 | 15%  | 16.5%  | 165,000원      |
| 6,800만원  | 4,469만원 | 15%  | 16.5%  | 165,000원      |
| 7,200만원  | 4,810만원 | 15%  | 16.5%  | 165,000원      |
| 7,600만원  | 5,151만원 | 24%  | 26.4%  | 264,000원      |
| 8,000만원  | 5,492만원 | 24%  | 26.4%  | 264,000원      |
| 8,400만원  | 5,846만원 | 24%  | 26.4%  | 264,000원      |
| 8,800만원  | 6,206만원 | 24%  | 26.4%  | 264,000원      |
| 9,200만원  | 6,566만원 | 24%  | 26.4%  | 264,000원      |
| 9,600만원  | 6,926만원 | 24%  | 26.4%  | 264,000원      |
| 10,000만원 | 7,286만원 | 24%  | 26.4%  | 264,000원      |
| 10,400만원 | 7,651만원 | 24%  | 26.4%  | 264,000원      |
| 10,800만원 | 8,023만원 | 24%  | 26.4%  | 264,000원      |
| 11,200만원 | 8,395만원 | 24%  | 26.4%  | 264,000원      |
| 11,600만원 | 8,767만원 | 24%  | 26.4%  | 264,000원      |
| 12,000만원 | 9,140만원 | 35%  | 38.5%  | 385,000원      |

1인 가구·기본공제 150만원·4대보험료 공제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.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제외 기준. 부양가족이 있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한계세율 구간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.

## 2026 연봉별 실수령액표

---

국민연금 4.75%, 건강보험 3.595%, 장기요양 13.14%, 고용보험 0.9%를 적용했습니다. 2026년 인상분이 반영된 값입니다.

| 연봉      | 월 지급액     | 4대보험    | 소득세등    | 월 실수령액    |
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2,000만원 | 1,666,666 | 142,520 | 16,086  | 1,508,060 |
| 2,100만원 | 1,750,000 | 150,617 | 17,950  | 1,581,433 |
| 2,200만원 | 1,833,333 | 158,715 | 19,813  | 1,654,805 |
| 2,300만원 | 1,916,666 | 166,814 | 21,676  | 1,728,176 |
| 2,400만원 | 2,000,000 | 174,911 | 23,539  | 1,801,550 |
| 2,500만원 | 2,083,333 | 183,008 | 25,403  | 1,874,922 |
| 2,600만원 | 2,166,666 | 191,106 | 27,266  | 1,948,294 |
| 2,700만원 | 2,250,000 | 199,205 | 29,129  | 2,021,666 |
| 2,800만원 | 2,333,333 | 207,303 | 30,992  | 2,095,038 |
| 2,900만원 | 2,416,666 | 215,400 | 32,856  | 2,168,410 |
| 3,000만원 | 2,500,000 | 223,499 | 34,823  | 2,241,678 |
| 3,100만원 | 2,583,333 | 231,596 | 39,481  | 2,312,256 |
| 3,200만원 | 2,666,666 | 239,693 | 44,139  | 2,382,834 |
| 3,300만원 | 2,750,000 | 247,792 | 48,797  | 2,453,411 |
| 3,400만원 | 2,833,333 | 255,890 | 53,455  | 2,523,988 |
| 3,500만원 | 2,916,666 | 263,987 | 61,308  | 2,591,371 |
| 3,600만원 | 3,000,000 | 272,085 | 71,660  | 2,656,255 |
| 3,700만원 | 3,083,333 | 280,183 | 82,011  | 2,721,139 |
| 3,800만원 | 3,166,666 | 288,279 | 92,363  | 2,786,024 |
| 3,900만원 | 3,250,000 | 296,378 | 102,714 | 2,850,908 |
| 4,000만원 | 3,333,333 | 304,477 | 113,065 | 2,915,791 |
| 4,100만원 | 3,416,666 | 312,573 | 123,417 | 2,980,676 |
| 4,200만원 | 3,500,000 | 320,672 | 133,768 | 3,045,560 |
| 4,300만원 | 3,583,333 | 328,770 | 144,119 | 3,110,444 |
| 4,400만원 | 3,666,666 | 336,866 | 154,471 | 3,175,329 |

| 연봉      | 월 지급액     | 4대보험    | 소득세등    | 월 실수령액    |
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4,500만원 | 3,750,000 | 344,965 | 164,822 | 3,240,213 |
| 4,600만원 | 3,833,333 | 353,064 | 175,173 | 3,305,096 |
| 4,700만원 | 3,916,666 | 361,160 | 185,525 | 3,369,981 |
| 4,800만원 | 4,000,000 | 369,260 | 196,701 | 3,434,039 |
| 4,900만원 | 4,083,333 | 377,357 | 208,427 | 3,497,549 |
| 5,000만원 | 4,166,666 | 385,453 | 220,154 | 3,561,059 |
| 5,100만원 | 4,250,000 | 393,553 | 231,880 | 3,624,567 |
| 5,200만원 | 4,333,333 | 401,650 | 243,606 | 3,688,077 |
| 5,300만원 | 4,416,666 | 409,748 | 255,333 | 3,751,585 |
| 5,400만원 | 4,500,000 | 417,847 | 267,059 | 3,815,094 |
| 5,500만원 | 4,583,333 | 425,943 | 278,786 | 3,878,604 |
| 5,600만원 | 4,666,666 | 434,041 | 290,512 | 3,942,113 |
| 5,700만원 | 4,750,000 | 442,140 | 302,238 | 4,005,622 |
| 5,800만원 | 4,833,333 | 450,237 | 313,965 | 4,069,131 |
| 5,900만원 | 4,916,666 | 458,335 | 325,691 | 4,132,640 |
| 6,000만원 | 5,000,000 | 466,434 | 337,417 | 4,196,149 |
| 6,100만원 | 5,083,333 | 474,529 | 349,144 | 4,259,660 |
| 6,200만원 | 5,166,666 | 482,628 | 360,870 | 4,323,168 |
| 6,300만원 | 5,250,000 | 490,727 | 372,596 | 4,386,677 |
| 6,400만원 | 5,333,333 | 498,823 | 384,323 | 4,450,187 |
| 6,500만원 | 5,416,666 | 506,922 | 396,049 | 4,513,695 |
| 6,600만원 | 5,500,000 | 515,021 | 407,775 | 4,577,204 |
| 6,700만원 | 5,583,333 | 523,116 | 419,502 | 4,640,715 |
| 6,800만원 | 5,666,666 | 531,215 | 431,228 | 4,704,223 |
| 6,900만원 | 5,750,000 | 539,313 | 442,955 | 4,767,732 |

| 연봉      | 월 지급액     | 4대보험    | 소득세등    | 월 실수령액    |
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7,000만원 | 5,833,333 | 547,410 | 454,681 | 4,831,242 |
| 7,100만원 | 5,916,666 | 555,509 | 466,407 | 4,894,750 |
| 7,200만원 | 6,000,000 | 563,607 | 478,134 | 4,958,259 |
| 7,300만원 | 6,083,333 | 571,703 | 489,860 | 5,021,770 |
| 7,400만원 | 6,166,666 | 579,802 | 501,586 | 5,085,278 |
| 7,500만원 | 6,250,000 | 587,900 | 518,801 | 5,143,299 |
| 7,600만원 | 6,333,333 | 595,997 | 537,563 | 5,199,773 |
| 7,700만원 | 6,416,666 | 604,096 | 556,325 | 5,256,245 |
| 7,800만원 | 6,500,000 | 612,194 | 575,087 | 5,312,719 |
| 7,900만원 | 6,583,333 | 620,290 | 593,850 | 5,369,193 |
| 8,000만원 | 6,666,666 | 628,389 | 612,611 | 5,425,666 |
| 8,100만원 | 6,750,000 | 636,487 | 631,374 | 5,482,139 |
| 8,200만원 | 6,833,333 | 642,526 | 650,679 | 5,540,128 |
| 8,300만원 | 6,916,666 | 646,667 | 670,486 | 5,599,513 |
| 8,400만원 | 7,000,000 | 650,806 | 690,293 | 5,658,901 |
| 8,500만원 | 7,083,333 | 654,944 | 710,101 | 5,718,288 |
| 8,600만원 | 7,166,666 | 659,085 | 729,908 | 5,777,673 |
| 8,700만원 | 7,250,000 | 663,223 | 749,715 | 5,837,062 |
| 8,800만원 | 7,333,333 | 667,363 | 769,522 | 5,896,448 |
| 8,900만원 | 7,416,666 | 671,504 | 789,329 | 5,955,833 |
| 9,000만원 | 7,500,000 | 675,643 | 809,136 | 6,015,221 |
| 9,100만원 | 7,583,333 | 679,781 | 828,944 | 6,074,608 |
| 9,200만원 | 7,666,666 | 683,922 | 848,751 | 6,133,993 |
| 9,300만원 | 7,750,000 | 688,061 | 868,558 | 6,193,381 |
| 9,400만원 | 7,833,333 | 692,200 | 888,365 | 6,252,768 |

| 연봉       | 월 지급액     | 4대보험    | 소득세등      | 월 실수령액   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9,500만원  | 7,916,666 | 696,341 | 908,172   | 6,312,153 |
| 9,600만원  | 8,000,000 | 700,480 | 927,979   | 6,371,541 |
| 9,700만원  | 8,083,333 | 704,618 | 947,787   | 6,430,928 |
| 9,800만원  | 8,166,666 | 708,759 | 967,594   | 6,490,313 |
| 9,900만원  | 8,250,000 | 712,898 | 987,401   | 6,549,701 |
| 10,000만원 | 8,333,333 | 717,037 | 1,007,208 | 6,609,088 |

1인 가구·기본공제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. 부양가족과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실수령액은 이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.

## 2026년 귀속 공제 한눈에 보기

## 세액공제 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바로 뺀다

| 항목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연금저축 단독           | 600만원 · 15% 또는 12%    |
| 연금저축 + IRP        | 900만원 · 15% 또는 12%    |
| 의료비 (일반)          | 3% 초과분 · 15% · 700만원  |
| 의료비 (본인·65세·장애인)  | 15% · 한도 없음           |
| 난임 시술비            | 30% · 한도 없음           |
| 교육비 (본인)          | 15% · 한도 없음           |
| 교육비 (초·중·고 / 대학생) | 300만원 / 900만원         |
| 월세                | 15% 또는 17% · 1,000만원  |
| 기부금               | 15% · 1,000만원 초과분 30% |
| 자녀 1명 / 2명 / 3명   | 25 / 55 / 95만원        |
| 결혼 (2026년이 마지막)   | 1인당 50만원              |
| 표준세액공제            | 13만원                  |

## 소득공제 — 세금 매길 소득을 깎는다

| 항목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용카드              | 25% 초과분 · 15%         |
| 체크카드 · 현금영수증      | 25% 초과분 · 30%         |
| 전통시장 · 대중교통       | 40%                   |
| 문화체육 (총급여 7천 이하)  | 30%                   |
| 카드 기본한도 (7천 이하)   | 300 / 350 / 400만원     |
| 카드 기본한도 (7천 초과)   | 250 / 275 / 300만원     |
| 카드 추가한도           | 200만원 · 문화체육 포함 300만원 |
| 주택청약종합저축          | 300만원 · 40%           |
|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     | 600 ~ 2,000만원         |
| 기본공제 / 경로우대 / 장애인 | 150 / 100 / 200만원     |

공제율은 소득세 기준입니다.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.1배입니다.

## 2025년 귀속과 달라진 것

### ● 이 네 가지는 작년 자료와 다릅니다

자녀세액공제 나이 8세 → 9세 이상 (2017년생은 부칙 특례로 유지)

신용카드 기본한도 자녀 수 연계 신설

국민연금 요율 4.5% → 4.75%

건강보험 요율 3.545% → 3.595%

## 근거 자료 출처

이 책의 모든 수치는 아래 공식 자료를 교차 확인한 것입니다. 숫자가 의심되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.

**법령 —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**

소득세법 제52조(장기주택저당차입금) · 제55조(세율) · 제59조(근로소득세액공제) · 제59조의2(자녀세액공제) · 제59조의3(연금계좌) · 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

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(주택청약종합저축) · 제95조의2(월세) · 제126조의2(신용카드)

**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(easylaw.go.kr)**

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· 자녀세액공제 · 종합소득세율표 (2026.8.15 기준)

**재정경제부 (mofe.go.kr)**

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· 신용카드 공제한도 자녀 수 연계 상향 · 결혼세액공제 ·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한도

**보건복지부 (mohw.go.kr) · 복지로**

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.9448% 고시 · 2026년 건강보험료율 7.19%

**국민연금공단 (nps.or.kr)**

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 조정 안내 (41만원 ~ 659만원, 2026.7.1 적용)

**정책브리핑 (korea.kr)**

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· 연말정산 달라진 점 ·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확대

## ● 개정판 안내

국세청 「2026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」는 통상 11월에 공개됩니다. 발간 후 전 항목을 다시 대조해 개정판을 [salarystock.com/library/](http://salarystock.com/library/) 에 올립니다.

## 여기까지 읽으셨다면

이제 홈택스를 열고 올해 카드 사용액부터 확인해 보세요.

숫자를 확인하는 데 5분, 자동이체를 거는 데 10분이면 끝납니다.

계산기와 연봉표는 [salarystock.com/library/](https://salarystock.com/library/) 에 무료로 열어 두었습니다.